



법 조항	주요 내용	벌칙
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	○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하는 회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받아야 함	1천만원 이하 과태료
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	○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함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6조 관리감독자	○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	○상시근로자 수/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/보건관리자 선임(안전·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가능) (300인 이상의 경우 자체 선임)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29조 안전·보건교육	○정기교육 : 사무직 및 판매직(6H/반기) 사무직 외 판매직 외(12H/반기) ○관리감독자 정기교육 : 연간 16H ○채용 시 교육 : 일용직/1주일(1H), 1주일~1개월(4H), 그 외(8H) ○특별교육 : 일용직/1주일(2H), 일용직/1주일(제39호(8H)), 그 외(16H) ○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: 일용직/1주일(1H), 그 외(2H)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34조 법령요지 등의 게시 등	○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함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	○건설물, 기계·기구·설비, 원재료, 가스·증기·분진, 작업행동 등 유해·위험요인 찾아내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범위인지 평가 및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하며, 근로자에 대한 위험/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해야 함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37조 안전보건표지 설치·부착	○유해·위험한 장소, 시설·물질에 대한 경고, 비상 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·안내 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,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하며,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함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38조 안전조치	○기계·기구, 폭발성, 발화성 및 인화성물질, 전기, 열, 중량물 취급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해야 함	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제39조 보건조치	○원재료·가스·증기·분진·흙·미스트·산소결핍·병원체·방사선·유해광선·고열·한랭·초음파·소음·진동·이상기압·기계·액체·찌꺼기·계측감시, 컴퓨터단말기 조작, 정밀공작, 단순반복작업 및 과도한 부담작업, 환기·채광·조명·보온·방습·청결, 폭염·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해야 함	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	○주로 고객을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대,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, 폭행,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해야 함	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
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	○발생개요·원인 및 보고 시기,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○사망자 발생/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·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,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(전자문서 포함)	은폐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미보고/거짓 : 5000만원 이하 과태료
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	○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 해야 함	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제93조 안전검사	○프레스·전단기·크레인(2톤미만 제외)·리프트·압력용기·곤돌라·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·원심기(산업용)·롤러기·사출성형기·고소작업대·컨베이어·산업용 로봇·혼합기·파쇄기·분쇄기(26.6.26.시행)등은 2년마다 안전 검사 받아야 함	1천만원 이하 과태료
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	○사업주는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갖춰 두어야 함 ○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함 ○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해야 함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	○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 해야 함 * 기재항목 : 제품명/그림문자/신호어/유해·위험문구/예방조치문구/공급자정보	3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25조 작업환경측정	○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,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시설·설비의 설치·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등의 조치해야 함 * 유해인자(192종) : 화학적 인자[유기화합물(114종), 금속류(24종), 산·알칼리류(17종), 가스상태류(15종), 허가대상유해물질(12종), 금속가공유(1종)], 물리적인자(2종), 분진(7종)	1천만원 이하 과태료
제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	○사업주는 근로자(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)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함(크기·위치·온도·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·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함)	1천 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	○일반건강진단 : 사무직 1회/2년, 비사무직 1회/1년 ○특수건강진단(배치전건강진단) :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실시 * 유해인자(181종) : 화학적 인자[유기화합물(109종), 금속류(20종), 산·알칼리류(8종), 가스상태류(14종), 허가대상유해물질(12종), 금속가공유(1종)], 분진(7종), 물리적 인자(8종), 야간작업(2종)	1천만원 이하 과태료
제164조 서류의 보존 등	○3년 - 안전보건관리책임자·안전·보건관리자·안전보건관리담당자 - 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- 안전·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- 산업재해 발생원인 기록 -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-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○5년 -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서 ○2년 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○30년 -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	300만원 이하 과태료